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763) 제안설명

존경하는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 
남창진 의원입니다.

이렇게 선배·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 
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 
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 
말씀을 드립니다.

그럼 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 
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이 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 
것으로,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,  
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,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 
사용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 
고쳐 나감으로써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려는  
것입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 
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 
것을 당부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